

새활용타운 소방시설점검 위탁용역 과업지시서

과 업 지 시 서

용역명: 새활용타운 소방시설점검(월간, 종합정밀, 작동기능) 위탁용역

기 간: 2025. 1. 1 ~ 2024. 12. 31까지

1. 본 과업지시서는 새활용타운 소방시설점검(월간, 종합정밀, 작동기능점검) 위탁용역에 관한 사항이다.

2. 군포도시공사를 “발주기관” 이라 칭하고, 소방시설점검 위탁용역업체를 “계약상대자” 라 칭한다.

3. (총 칙)

“발주기관” 과 “계약상대자” 는 위 소방시설점검 위탁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별표 1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4. (소방시설점검의 시행 시기)

1) 소방시설점검 위탁용역은 계약기간 중 월 1회 정기점검과 년 1회 종합정밀 점검 및 년 1회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서를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“발주기관” 에 제출하고 1부는 관계행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생략한다.

2)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수행하는 소방시설점검 위탁용역의 한계는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“발주기관” 에 고지하는 한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거나 조치가 간단한 문제점은 즉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문제점은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으로 한다.

5. (시설관리 대행 방법)

“계약상대자” 는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소방시설별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다만, 기능 및 동작여부를 육안이나 수동으로 점검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6. (비용의 부담)

- 1) 본 계약서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에 수반되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인 보수사항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보수사항에 대해 “발주기관”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2) 소방시설물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인 화재 감지기 오동작 및 표시등 램프 교체 등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시행한다.
- 3) 소방시설점검 중 관계자 요청이 있을 경우 소방계획서 작성을 협조한다.

7. (소방시설물 통상점검표 작성)

- 1) “계약상대자”는 매월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월간(통상) 점검 결과표를 “발주기관”에게 제출한다.
- 2) “계약상대자”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“발주기관”에게 정비방법 등에 대한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.

8. (대행 수수료 지불)

“계약상대자”가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서와 함께 서면청구를 제출하면 “발주기관”은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을 지불한다.

9. (점검의 상호협조)

- 1) “계약상대자”는 소방시설점검의 일정, 기간 및 방법 등을 “발주기관”과 협의하여 “발주기관”의 승인을 받은 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“발주기관”은 점검 및 검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안내와 필요한 도면 및 자료 등을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3) “발주기관”은 검사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 및 보안사항 등 건물의 특수성을 사전에 “계약상대자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10. (관리유지의 책임)

- 1) “계약상대자”는 소방시설점검을 함에 있어서 관계규정에 의한 관리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점검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서는 아니한다.
- 2) 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점검결과 통보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 및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11. (기밀 유지)

“계약상대자”는 소방시설물 관리유지를 함에 있어서 취득한 “발주기관”의 기밀사항 및 점검결과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12. (손해배상)

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13. (계약의 해제·해지)

- 1) 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·해지 할 수 있다.
 - ① “계약상대자”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이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② “계약상대자”가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, 어음 및 수표의 부도, 제3자에 의한 가압류·가처분·강제집행, 금치산·한정치산·파산선고 또는 회사의 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
 - ③ “계약상대자”의 기술능력 미달 등으로 등록증의 반납, 폐업, 휴업처리 되었을 경우
 - ④ “계약상대자”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
 - ⑤ 사망, 실종, 질병,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.
- 2) “계약상대자”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·해지 할 수 있다.
 - ① “발주기관”이 “계약상대자”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수수료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연시켜 “계약상대자”가 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
 - ② “발주기관”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
 - ③ “발주기관”이 “계약상대자”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 하여 “계약상대자”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3)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다.
- 4)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해제·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에게 즉시 통보한다.

- 5) “발주기관” 과 “계약상대자” 는 제1항 및 제2항의 해제·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14일 전까지 통보한다.

14. (“계약상대자” 의 면책사유)

- 1) “발주기관” 이 임의로 시설관리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지연시켜 소방시설 검사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 발생한 손해.
- 2) 건물 관계자 및 건물의 입주자나 “발주기관” 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변에 끼친 손해 및 안전사고,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한 손해.
- 3) 소방시설관리와 관련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발생한 손해.
- 4) 소방시설관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, 전기, 가스, 기타시설 등의 외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 및 그로 인한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.

15. (분쟁조정)

- 1)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“발주기관” 과 “계약상대자” 가 협의하여 정한다.
- 2) 제 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며 관할 관청의 분쟁조정 위원회 중재 결과에 따른다.
- 3) 제1항, 제2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“발주기관” 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.

16. (기 타)

본 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관례 또는 관습에 따른다.